

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[별표] <개정 2019. 6. 11.>

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(제2조, 제2조의2, 제3조, 제4조, 제4조의2
및 제11조 관련)

(단위: 년)

연구·교육 경력연수 직명	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	전문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
	연구실적 연수	교육경력 연수	계	연구실적 연수	교육경력 연수	계
교수	4	6	10	5	8	13
부교수	3	4	7	4	6	10
조교수	2	2	4	3	4	7
강사	1	1	2	1	2	3
조교	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					

비고: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